
2017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주식회사 IBK저축은행의

2017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3월 9일

주식회사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김 성 미 (인)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3
1) 조직도	3
2) 지배구조의 특징	4
3) 지배구조 현황(요약)	5
다. 관련 규정	5
2. 이사회	6
가. 역할(권한과 책임)	6
1) 총괄	6
2) 구체적인 역할	6
가) 경영목표 및 평가	6
나) 정관 변경	8
다) 예산 및 결산	8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9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제정·개정 및 폐지	9
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의 수립	11
사)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	12
아) 기타	12
나. 구성(이사)	13
1) 총괄	13
2) 구성원	15
3) 요약	19
다. 활동내역	21
1) 활동내역 개요	21
2) 회의 개최내역	21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35
1) 이사회 평가	35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36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36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8
가. 역할(권한과 책임)	38
나. 구성	39
다. 선임기준	40
1) 후보 자격요건	40
2) 후보 추천 절차	40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40
라. 활동내역 및 평가	40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4. 사외이사 활동 · 보수 등	41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41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41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55
가) 사외이사 임효성	55
(1) 활동내역	55
나) 사외이사 송석구	55
(1) 활동내역	55
다) 사외이사 변상구	55
(1) 활동내역	55
라) 사외이사 강일원	56
(1) 활동내역	56
마) 요약	56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56
다. 사외이사 교육 · 연수	56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57
1) 사외이사 임효성	57
가) 소극적 자격요건	57

나) 적극적 자격요건	57
다) 요약	57
2) 사외이사 송석구	58
가) 소극적 자격요건	58
나) 적극적 자격요건	58
다) 요약	58
3) 사외이사 변상구	59
가) 소극적 자격요건	59
나) 적극적 자격요건	59
다) 요약	59
4) 사외이사 강일원	60
가) 소극적 자격요건	60
나) 적극적 자격요건	60
다) 요약	60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60
바. 사외이사 평가	61
1) 평가 개요	61
2) 내부평가	61
가) 내부평가 개요	61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61
(1) 총론,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61
3) 외부평가	62
가) 외부평가 개요	62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62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62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62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62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63
1) 사외이사 임효성	63
가) 재직기간	6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3
2) 사외이사 송석구	63
가) 재직기간	6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3
3) 사외이사 변상구	64
가) 재직기간	64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4
4) 사외이사 강일원	64
가) 재직기간	64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4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65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65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66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66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66
1) 일반	66
2) 비상계획	67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68
1) 소극적 요건	68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68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69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69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70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70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70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70

3) 후보군 현황	70
바. 이사회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70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71
6. 감사위원회	72
가. 역할(권한과 책무)	72
1) 총괄	72
2) 구체적 역할	72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72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73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73
라) 재무제표 검토 등	74
마)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75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75
1) 총괄	75
2) 구성원	7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6
1) 활동내역 개요	76
2) 회의 개최내역	77
3) 평가	84
라. 감사보조조직 등	84
7. 위험관리위원회	85
가. 역할(권한과 책무)	85
1) 총괄	85
2) 구체적 역할	85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85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85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85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86
마) 기타	86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86
1) 총괄	86
2) 구성원	86
다. 활동내역 및 평가	87
1) 활동내역 개요	87
2) 회의 개최내역	87
3) 평가	88
 8. 보수위원회	89
가. 역할(권한과 책무)	89
1) 총괄	89
2) 구체적인 역할	89
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심의·의결	89
나)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9
다)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9
라)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90
마)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90
바)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 심의·의결	90
사)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90
나. 구성(보수위원회위원)	90
1) 총괄	90
2) 구성원	9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91
1) 활동내역 개요	91
2) 회의 개최내역	91
3) 평가	91

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92
가. 총괄	92
나. 구성	93
1) 총괄	93
2) 구성원	93
다. 권한과 책임	94
1) 총괄	94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94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94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94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95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95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95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95
9) 임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95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96
1) 의사결정 절차	96
2) 활동내역 개요	96
3) 회의 개최내역	96
4) 평가	97
2. 보수체계	98
가. 주요사항	98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98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98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98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98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98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99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99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99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99
나. 보수 세부사항	100
1) 임직원 총보수	100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100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01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01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101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102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102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103
6) 이연보수의 조정	103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104
 관련규정	 105
첨부1. 정관	106
첨부2. 이사회 규정	127
첨부3. 지배구조내부규범	132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148
첨부5. 감사위원회 규정	151
첨부6. 보수위원회 규정	158
첨부7. 위험관리기준	162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 저축은행은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 저축은행이 이행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정적인 지배구조

당 저축은행은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이사가 아닌 경영진에 대한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2017년말 현재는 이사회 57%가 사외이사로 구성)

위와 같은 제도 등을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견제의 틀 안에서 상호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건전한 지배구조

당 저축은행은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의 법령과 정관, 내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내용과 관련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항을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을 통해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2017년 말 현재 이사회는 금융 3명, 법률 2명, 경영 1명, 행정 1명으로 구성)

그리고 구성원간의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2) 투명한 지배구조

마지막으로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현을 위해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주주총회일 20일 전 당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지배구조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둘째 정관, 이사회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하여 당 저축은행의 지배구조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셋째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주요 경영 현황을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임·해임,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공시 내용을 당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공시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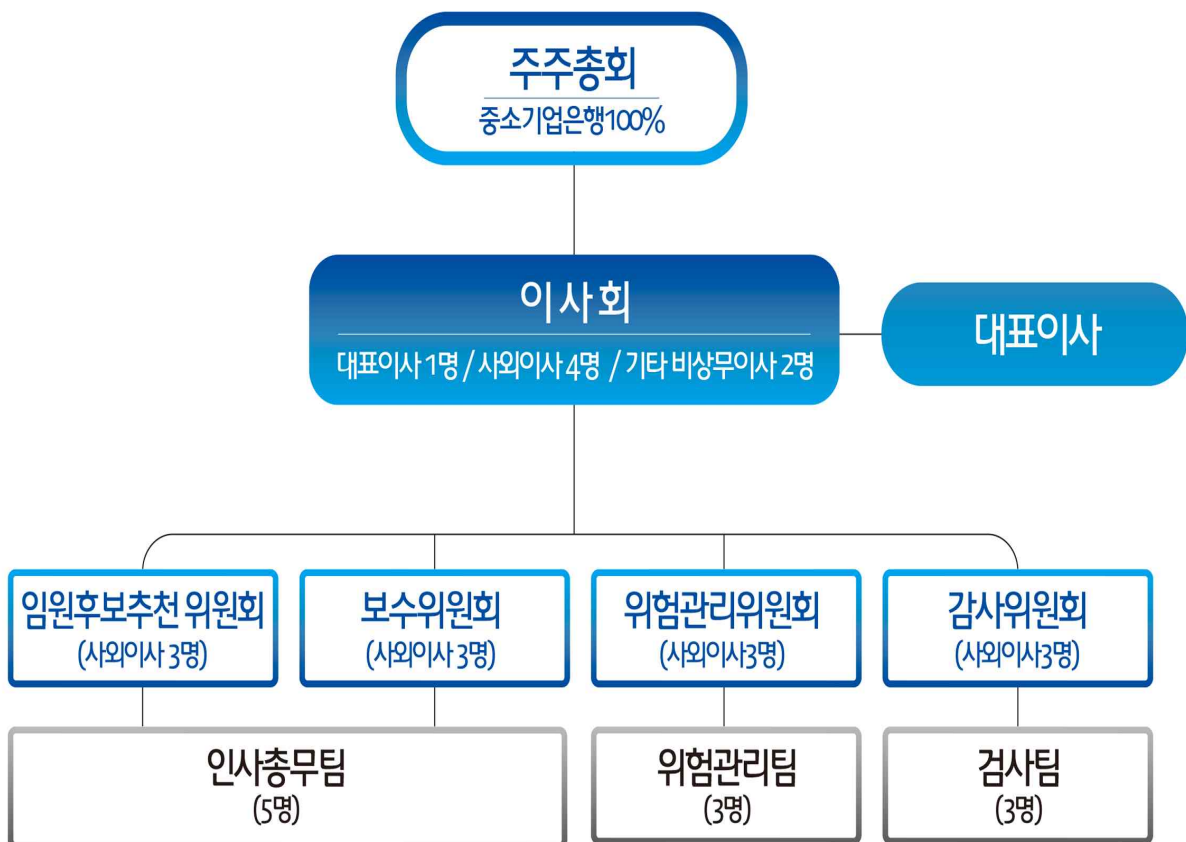
(결산공시 : <http://www.ibksb.co.kr/disclosure/closing>)

(수시공시 : <http://www.ibksb.co.kr/disclosure/timely>)

당 저축은행은 경영환경 및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에 대해서도 매년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1) 이사회

당 저축은행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총원 7명 중 사외이사 수는 4명, 구성 비율이 57%로 지배구조법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등의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이름/ 사내·사외이사)	관련 규정
이사회	주요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4/7	김성미 (사내이사)	정관§48조 이사회규정§5조 지배구조내부규범§9조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집행임원 후보 추천	3/3	변상구 (사외이사)	정관§59조의1 이사회규정§7조 지배구조내부규범§19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6조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	3/3	임효성 (사외이사)	정관§59조의2 이사회규정§7조 지배구조내부규범§20조 감사위원회규정§14조
보수위원회	보상정책 수립 및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	3/3	송석구 (사외이사)	정관§59조의4 이사회규정§7조 지배구조내부규범§22조 보수위원회규정§5조
위험관리 위원회	위험관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3/3	강일원 (사외이사)	정관§59조의3 이사회규정§7조 지배구조내부규범§21조 위험관리기준§20조의2

* 당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로써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중 1명을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음

다.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 규정
- 첨부3. 지배구조내부규범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6. 보수위원회 규정
- 첨부7. 위험관리기준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이사회는 당 저축은행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주요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건전한 견제기능을 통해 건전경영의 기반 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보유한 사외이사, IBK금융그룹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금융 분야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및 비상무이사 등으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양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에는 내·외부 전문 인력 등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는 당 저축은행의 발전과,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경영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구체적 역할은 당 저축은행의 정관 제48조, 이사회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 및 평가

당 저축은행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평가합니다.(지배구조법 § 15조제1항제1호, 정관 § 48조제1항제4호, 이사회규정 § 5조제1항제1호)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경영목표·전략은 2017년 11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17년 12월 IBK금융그룹 경영계획 발표회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018년 1월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2018년 경영목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7월경에 2018년 경영목표·전략에 대한 중간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나) 정관 변경

당 저축은행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여할 정관 변경 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지배구조법 § 15조제1항제2호, 정관 § 48조제1항제1의2호)

이에 따라 2017년 3월에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 변경 안을 의결하였으며, 2017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정관 변경 안이 승인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이사의 수, 이사회의 소집권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등이며, 개정사유는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관련 내용을 당 저축은행 내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 예산 및 결산

당 저축은행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임직원 보수 포함)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여할 결산 안(배당 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지배구조법 § 15조제1항제3호, 정관 § 48조제1항제5호)

이 경우 예산은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예산은 2018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2018년 1월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총 예산은 212억원으로 전년대비 33억원 증가한 금액이며, 세부적으로 경비예산 22억원 증가, 자본예산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비예산은 총 174억원이며, 이중 인건비 93억원, 기타경비 81억원입니다.

2016년 결산(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책임자가 2017년 1월 초안을 마련하였고, 외부감사인 검토를 거쳐 2017년 2월 개최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17년 3월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2017년 2월 개최한 2017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2016년 결산 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부문은 총 1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전기 대비 154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은 수익여신 증가, 비용절감의 영향 등입니다.

자산부문에 있어서는 수익여신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기 대비 1,366억원 증가한 총 자산 7,848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 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 9조제2항제4호에 의거 회사의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 § 48조제1항 각호 및 이사회규정 § 5조제1항 각호 등을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보다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제정·개정 및 폐지

당 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 9조제2항제5호에 의거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 § 48조제1항제16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2016년 10월 개최된 2016년도 제10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개정한 후 2017년도에는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당 저축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내부통제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가 아닌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 반기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법규준수 매뉴얼 확정, 당 저축은행 사칭에 대한 대응 및 조치사항 의결, 2017년 12월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11월 2017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자율)평가 결과 보고, 2017년 12월 2017년도 제12차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5조제1항제4호는 이사회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권한을 위임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으로 하도록 위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요하는 이사회 권한에 해당하는 일부 내용을 개별 이사회 내 위원회에 분산하여 위임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조치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이며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당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험관리기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의2(위험관리위원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단, 제3절 위험관리협의회 및 제4절 리스크관리본부 운영 기준의 개정, 단순 자구수정, 별표 양식변경, 조직변경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변경 등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승인 및 협의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험관리기준은 2017년 3월 개최된 2017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3월 2017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2017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결 하였습니다.

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의 수립

당 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 9조제2항제6호에 의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가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 § 48조제1항제10의2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가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개최한 2017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김성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동 이사회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 : 위원장 임효성, 위원 송석구, 위원 변상구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장 변상구, 위원 임효성, 위원 강일원
- 보수위원회 : 위원장 송석구, 위원 임효성, 위원 강일원
- 위험관리위원회 : 위원장 강일원, 위원 송석구, 위원 변상구

그 밖에 2017년 3월 개최한 2017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개최한 2017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집행임원 연임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이사가 아닌 경영진(집행임원, 준법감시인)의 인사조치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간의 이해상충행위 감독

당 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9조제2항제7호에 의거 대주주 임원 등과 당 저축은행간 이해상충 행위의 감독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관 §48조제1항제10의3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

당 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9조제2항제8호에 의거 그 밖의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관 §48조제1항제22호 및 이사회규정 §5조제1항제25호에 동일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규정 §5조제1항 각 호에 의거 주주총회 관련사항, 일반 경영 관련사항, 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및 기타사항 등의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내규로 정한 경영 및 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체계를 갖추어 효율적인 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 저축은행 이사회는 총 원수는 3명 이상이며, 그중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이사 총 수의 과반수로 합니다.(정관 § 39조)

최소원수를 3명으로 규정한 것은 지배구조법 § 12조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단, 사외이사를 3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총 수의 과반수로 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7년말 현재 이사회는 모두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이사의 임기는 상임이사(대표이사)의 경우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정관 § 44조)

이는 상임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017년 3월 201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상현 이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를 함에 따라 퇴임하고, 김성미 이사가 2년의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으며, 임형균 기타비상무이사가 1년의 임기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4명 전원이 2017년 11월 임기만료 되었으나, 상법 § 386조에 의거 새로운 사외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지배구조법 § 5조 제1항 각호, 동법 § 6조제1항 각호, 동법 시행령 § 7조, § 8조가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추가로 상법 § 382조제3항, 동법 § 542조의8제2항의 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지배구조내부규범 § 7조제1항 및 § 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적합성(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성(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2017년말 현재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 3명, 법률 2명, 경영 1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임중인 이사는 지배구조법 이후에는 동 법령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現 IBK저축은행 김성미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17년 3월 선임(임기는 1년이고 연임 가능)되었습니다.

2) 구성원

연차보고서 대상기간인 2017년 당 저축은행 이사회 구성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사 김성미(이사회 의장 / 대표이사)

김성미 이사는 201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와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3~ IBK저축은행 대표이사 (임기 : 2017.3.15.~2019.3.14.)
2014. 1 중소기업은행 개인고객본부장(집행간부)
2013. 1 중소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장
2012. 1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장
2010. 1 중소기업은행 서초동지점장
2007. 1 중소기업은행 잠실편지점장

김성미 이사는 대표이사로서 당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 임효성(선임사외이사 / 사외이사)

임효성 이사는 2015년도 제3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와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9~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15.9.5.~2017.11.20.)
2015. 8 한국펄프 판매 대표
2009. 1 KT 부평지사 지사장(상무보)
2007. 1 KT 충북본부 경영국장(상무보)
2006. 1 KT 청주지사 지사장(상무대우)
2005. 4 KT 충북영업총국 총국장(상무대우)

임효성 이사는 선임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2015.9월~현재) 위원 및 위원장,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 보수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 이사 송석구(사외이사)

송석구 이사는 2015년도 제4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와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10~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15.10.29.~2017.11.20.)

2014. 8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2011. 4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2008. 10 서울시 강서구청 비서실장

2003. 10 한나라당 중앙연수원 교수

2001. 11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1999. 10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법제사법)전문위원

송석구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2016.11월~현재) 위원, 보수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 및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라) 이사 변상구(사외이사)

변상구 이사는 2016년도 제11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와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 11~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16.11.21.~2017.11.20.)

2013. 9~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Director)

2011. 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

2010. 5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2009. 9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2006. 7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물류국장(고위공무원)
2005. 7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2004. 4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
2002. 1 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변상구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위원회(2016.11월~현재) 위원,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 및 위원장, 위험관리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마) 이사 강일원(사외이사)

강일원 이사는 2016년도 제11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와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 11~ IBK저축은행 사외이사 (임기 : 2016.11.21.~2017.11.20.)
2016. 9~ 가톨릭관동대학교 미래전략처장
2015. 9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부단장
2015. 9 가톨릭관동대학교 부교수
2013. 2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2010. 9 경기개발연구원 정책기획실 선임연구위원
2006. 7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2003. 10 부천시의회 의원(제4대~5대)

강일원 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 보수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 위험관리위원회(2017.3월~현재)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바) 이사 장세홍(기타비상무이사)

장세홍 이사는 2015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와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7~ IBK저축은행 비상무이사 (임기 : 2015.7.31.~2018.7.30.)
2015. 7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집행간부)
2015. 1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지역본부 본부장
2014. 1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2013. 1 중소기업은행 부산 지점장
2011. 1 중소기업은행 녹산공단 지점장
2010. 1 중소기업은행 웅상공단 지점장
2009. 1 중소기업은행 마산내서 지점장
2006. 1 기업분석부

장세홍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 이사 임형균(기타비상무이사)

임형균 이사는 201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최초 선임되었으며, 임기와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3~ IBK저축은행 비상무이사 (임기 : 2017.3.15.~2018.3.14.)
2017. 1~ 중소기업은행 개인여신부장
2016. 1 중소기업은행 평생고객부장
2015. 1 중소기업은행 동수원드림기업지점장

임형균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3) 요약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김성미	상임 이사	이사회회장 대표이사	- 중소기업은행 개인고객본부장(집행간부) - 중소기업은행 남중지역본부장 - 중소기업은행 반월중앙지점장	2017. 03.15.	2019. 03.14.	10 개월	
임효성	사외 이사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한국펄프 판매 대표 - KT 부평 지사장(상무보) - KT 충북본부 경영국장 - KT 청주지사 지사장 - KT 충북영업총국 총국장	2015. 09.05.	2017. 11.20.	27 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송석구	사외 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중앙당 부대변인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서울시 강서구청 비서실장 - 한나라당 중앙연수원 교수 -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015. 10.29.	2017. 11.20.	26 개월	보수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변상구	사외 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	- EBRD 이사회 이사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장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 본부 전략기획단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 물류국장(고위공무원)	2016. 11.21.	2017. 11.20.	13 개월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강일원	사외 이사	위험관리 위원회 위원장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미래전략처장 -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부단장 - 가톨릭관동대학교 부교수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경기개발연구원 정책기획실 선임연구위원	2016. 11.21.	2017. 11.20.	13 개월	위험관리 위원회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성명	구분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장세홍	기타 비상임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 - 중소기업은행 부산울산 지역본부 본부장 -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역 본부 본부장 - 중소기업은행 부산지점장	2015. 07.31.	2018. 07.30.	29 개월	
임형균	기타 비상임 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 중소기업은행 개인여신부장 - 중소기업은행 평생고객부장 - 중소기업은행 동수원드림 기업지점장	2017. 03.15.	2018. 03.14.	10 개월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에는 총 12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율은 83.6% (사외이사 100%)입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7회계연도 제1차 이사회 : 2017.02.13.(11시)

[안건 통지일 : 2017.02.08.]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상현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6기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제6기 자금세탁방지 업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16년도 4분기 여신 감리 결과 보고 외	특이의견 없음						
마.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통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2016년도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업무 수행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FY2016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6기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안), 영업보고서(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제6기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안), 영업보고서(안) 승인에 관한 사항

- 결산 주요 내용으로는 손익부문은 총 1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이는 전기 대비 154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수익여신 증가, 비용절감 영향 등입니다.

자산부문에 있어서는 수익여신 증가 등 기인하여 전기 대비 1,366억원 증가한 총 자산 7,848억원을 실현 하였습니다.

보고 가. 제6기 감사결과 보고

- 감사위원회는 매년 1 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감사현황 및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점검 하고 있습니다.

보고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매 분기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전원 적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보고 다. 제6기 자금세탁방지업무감사 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업무감사에서 내부 보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사항 1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 라. 2016년도 4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外

- 2016년도 4분기 총 43건 1,090억원의 여신감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지속거래 대상으로 특별한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 마.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통제 평가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통제 평가의 실시 결과 제5기 감사지적사항 개선결과 미보고 확인되어 개선 완료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 바. 2016년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 수행실적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상태 양호합니다.

보고 사. FY201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통제항목은 총 206개로 전사수준(통제환경, 위험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수준(여신, 유가증권, 수신, 자금관리, 유형/무형 자산 등)이 있으며, 특별한 이슈 사항은 없습니다.

나) 2017회계연도 제2차 이사회 : 2017.03.14.(11시 20분)

[안건 통지일 : 2017.03.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상현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2. 참석여부		불참 (사임)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7기 특별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제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임시 소집권자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에 대한 의결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이사 김성미(퇴임 임상현), 비상임이사 임형균(임기만료 권용대)의 이사 임면과 관련한 주주총회 소집

의결 나. 이사회 임시 소집권자 결정

- 이사회 의장 이사 임상현의 사임으로 신규 의장 선임전까지 이사회를 운영할 임시 의장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임시 의장은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으로 재임중인 임효성 이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의결 다.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 준법감시인을 겸직중이던 정현주 위험관리책임자의 사임으로 새로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위험관리책임자는 하상용 위험관리팀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고 가. 제7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 본부부서 IT팀 및 서면지점, 기타 수시감사의 이행 결과 시정사항 2건, 주의사항 3건, 현지조치 3건 등 중대한 지적사항의 발견 없습니다.

보고 나. 제7기 특별감사 결과 보고

- 대출 취급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 과실에 의한 여신 전결권 위반 (승인조건 불일치)으로 관할 지점장 및 담당직원에게 대하여 문책(주의 촉구)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고 다. 제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회계 관련 내부통제 부문,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운영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 2017회계연도 제3차 이사회 : 2017.03.14.(11시 50분)

[안전 통지일 : 2017.03.13.]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4.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대표이사 선임

- 사임한 이사 임상현의 후임으로 선임된 이사 김성미를 대표이사로 선임 하였습니다.

라) 2017회계연도 제4차 이사회 : 2017.03.30.(13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7.03.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불참 (개인사정)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4. 의결안건									
가. 2016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7회계연도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집행임원 경영 인센티브 지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집행임원 보수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취업규칙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주요규정 제정 및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2016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에 대한 의결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FY2016 재무제표 승인, 지배구조법 반영 정관 개정의 의결안건 3건과 FY2016 영업보고서를 확정하는 보고안건 1건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의결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 지배구조법에 의거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의결 다. 2017회계연도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 중소기업은행 부행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고,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김성미 대표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 아닌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임효성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 하였습니다.

의결 라. 위험관리기준 개정

- 지배구조법에 의거 위험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변경하는 위험관리기준을 개정 하였습니다.

의결 마. 집행임원 경영 인센티브 지급

- 이사회규정에 의거 집행임원의 경영 인센티브를 지급함을 결의 하였습니다.

의결 바. 집행임원 보수조정

- 이사회규정에 의거 집행임원의 2017년도 기본연봉을 1% 인상하는 조정을 결의 하였습니다.

의결 사. 취업규칙 개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등에 의거 취업규칙(복무규정) 내 명령 휴가 관련조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의결 아. 주요규정 제정 및 개정

- 지배구조법에 의거 당 저축은행의 이사회규정 내 위원회 명칭변경 등 개정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규정을 제정 하였습니다.

의결 자.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 지배구조법에 의거 이사회 내 신규 위원회에 대한 위원을 선임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에 변상구 사외이사, 위원에 임효성, 강일원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에 송석구 사외이사, 위원에 임효성, 강일원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강일원 사외이사, 위원에 송석구, 변상구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마) 2017회계연도 제5차 이사회 : 2017.04.28.(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7.04.2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불참 (개인사정)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17년도 1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회계규정 변경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보고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명동지점 정기감사 및 기타 수시감사 이행 결과 시정사항 4건, 주의사항 1건, 현지조치 1건 등 중대한 지적사항의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매 분기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전원 적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보고 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보고 라. 2017년도 1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 2017년도 1분기 총 45건 1,185억원의 여신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속거래 41건 1,155억원, 요관찰 4건 30억원으로 특별한 이슈 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 마. 회계규정 변경 보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내부 회계규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바) 2017회계연도 제6차 이사회 : 2017.07.12.(11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7.07.0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IBK기업은행 자회사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17년도 2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주요 주주와의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주요 주주와의 거래 승인

- 당 저축은행 본점의 임대차 계약 만료로 계약 연장에 대한 승인 요청 건으로, 임차면적은 1,626㎡, 임차보증금은 1,526백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며, 임차기간은 2년, 월 임차료 2.5백만원으로 계약함을 승인 하였습니다.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4개 영업점(대전, 대구, 진주, 마산)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시정 사항 6건, 주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현지조치 4건 등 중대한 지적 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나. IBK기업은행 자회사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 당 저축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로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현지조치 1건이 있으며, 그외 지도사항 3건, 권고사항 3건 등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보고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매 분기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전원 걱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보고 라.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걱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보고 마. 2017년도 2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 2017년도 2분기 총 57건 1,323억원의 여신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속거래 55건 1,303억원, 요관찰 1건 15억원, 개선기업 1건 5억원으로 확인되어 사후관리 등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사) 2017회계연도 제7차 이사회 : 2017.07.24.(10시 30분)

[안전 통지일 : 2017.07.1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4. 의결안전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전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주요 주주와의 거래 승인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전의 결정에 대한 의결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임이사 장세홍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과 관련한 주주총회 소집입니다.

아) 2017회계연도 제8차 이사회 : 2017.08.10.(10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17.08.09.]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2/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준법감시인 임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집행임원 연임 승인 및 보수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준법감시인 임면

- 준법감시인 임기 만료 및 지배구조법에 의거 임원급 신임 준법감시인으로 당 저축은행 감사본부장을 역임한 이영희 본부장(집행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의결 나. 집행임원 연임 승인 및 보수 보고

- 現 오충환 경영지원본부장(집행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연임을 승인하고, 보수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의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 지배구조법에 의거 연임된 오충환 경영지원본부장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본부(심사, 영업기획)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시정사항 3건, 개선사항 2건 등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나. 2017회계연도 2/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자) 2017회계연도 제9차 이사회 : 2017.09.04.(11시 30분)

[안전 통지일 : 2017.09.01.]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회계규정 개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준법감시인 보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업무집행책임자(집행 임원) 업무 분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이사회규정 개정

- 지배구조법 및 정관에 의거 당 저축은행의 이사회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이사회 기능 및 구성, 소집권자, 의결사항 등이 있습니다.

의결 나. 준법감시인 보수 결정

- 이사회규정에 의거 선임 준법감시인의 보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의결 다. 업무집행책임자(집행임원) 업무 분장

- 집행임원(부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부사장 선임 전까지 오충환 現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영업본부장을 겸직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본부(여신관리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시정사항 2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나. 회계규정 개정 보고

- 상호저축은행 표준회계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품의 보관·출납·확인과 관련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차) 2017회계연도 제10차 이사회 : 2017.10.18.(11시 40분)

[안전 통지일 : 2017.10.12.]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참석	
3. 보고안에 대한 의견								
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7회계연도 3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차입)거래 약정 기한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차입)거래 약정 기한 연장

- 당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여신거래의 기한 만료에 따라 약정기한의 3년 재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보고 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 의거 매 분기 내부통제시스템을 평가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전원 적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보고 나.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영업점(영업부, 동래, 중앙, 하단, 울산)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시정사항 8건, 주의사항 3건, 현지조치 3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다. 2017년도 3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 2017년도 3분기 총 54건 1,387억원의 여신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속거래 50건 1,233억원, 요관찰 3건 121억원, 개선기업 1건 33억원으로 확인되어 사후관리 등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카) 2017회계연도 제11차 이사회 : 2017.11.20.(11시 30분)

[안전 통지일 : 2017.11.1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7회계연도 3/4 분기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전								
가. 대손인정 신청 및 상각 처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대손인정 신청 및 상각 처리

- 부실채권 책임심의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한 채권 981건 4,707백만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 신청 및 상각 처리를 승인하였습니다.

보고 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 금융소비자보호규정에 의거 당 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수준을 계량항목 5건, 비계량항목 5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건수와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서 미흡함을 확인하여 개선대책 등을 보고였습니다.

보고 나.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본부(준법지원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수시감사 결과 시정사항 2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다. 2017회계연도 3/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업무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 중입니다.

타) 2017회계연도 제12차 이사회 : 2017.12.29.(12시)

[안전 통지일 : 2017.12.27.]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성미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장세홍	임형균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불참 (개인사정)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7년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임원보수규정 개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한도거래 자금 차입 약정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본점 3층 추가 임차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한도거래 자금 차입 약정 승인

- 유동성비율의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한도거래 차입 약정을 승인하는 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도거래금액 500억원, 대출이율 3.7110%(변동금리), 대출기한 2018년6월29일입니다.

의결 나. 본점 3층 추가임차의 건

- 당 저축은행 본점 소재 건물의 3층 일부를 추가 임차하는 건으로 임차 보증금 500백만원, 월 임차료 1백만원 증액하여 임차보증금은 2,026백만원, 월 임차료 3.5백만원으로 계약함을 승인 하였습니다.

보고 가. 2017회계연도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내부통제기준에 의거 실시한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나.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본부(인사총무팀, 위험관리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결과 시정사항 5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다. 2017년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평가한 당 저축은행 2017년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결과 총 15개 평가영역 중 10개영역 평균이상이며, 5개영역 평균이하로 권역순위 31위인 54.3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최종 평가결과는 평균이상으로 적정하나, 평균이하를 받은 일부 영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라. 임원보수규정 개정 보고

- 대표이사의 기본연봉을 1% 인상하는 임원보수규정의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당 저축은행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 저축은행은 2017년 3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시행함에 따라 2018년도부터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이사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이사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전제공수준, 이사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적시성,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의 실질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이사회이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당 금융회사의 주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은 2017년 3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18년도부터 직무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가부문은 크게 “구성”, “역할과 책임”, “운영” 세 부문으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식을 마련하여 이사회 보고 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 저축은행은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사회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당 저축은행은 이사회장으로 김성미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성미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행 부행장을 역임하는 등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고, 경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임이사인 김성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2017년 3월 개최한 2017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임효성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경영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이면서 당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2년 3개월간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 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동 위원회 규정 제6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독립적이면서 당 저축은행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으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및 대표집행임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 이외에도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임원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하며, 후보군의 관리 및 검증, 압축을 하고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표이사 이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 *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구성

당 저축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100%로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 3월 30일 동 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사외이사 3명을 신규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017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변상구	사외이사	위원장	'17.3.30	'17.11.20
임효성	사외이사	위원	'17.3.30	'17.11.20
강일원	사외이사	위원	'17.3.30	'17.11.20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내규와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 저축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표이사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정관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대상을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집행임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동 위원회는 2017년 3월 30일 설립되었으나,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대상자의 변경이 없어 활동내역이 없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동 위원회는 2017년 3월 30일 설립되었으나, 이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대상자의 변경이 없어, 설립이후 추천내역이 없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2017년 제1차 이사회: 2017. 2. 13. (월) 11:30 - 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6기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제6기 자금세탁방지 업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16년도 4분기 여신 감리 결과 보고 외	특이의견 없음				
	마. 자금세탁방지업무 내부통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2016년도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업무 수행 실적 보고	특이의견 없음				
	사. FY2016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6기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안), 영업보고서(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2차 이사회: 2017. 3. 14. (화) 11:20 - 11:35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7기 특별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제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이사회 임시 소집권자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3차 이사회: 2017. 3. 14. (화) 11:50 - 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4. 의결안건					
가. 대표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4차 이사회: 2017. 3. 30. (목) 13:30 - 14: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호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4. 의결안건						
가. 2016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7회계연도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기준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집행임원 경영 인센티브 지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집행임원 보수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취업규칙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주요규정 제정 및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자.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5차 이사회: 2017. 4. 28. (금) 10:30 - 11: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2017년도 1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회계규정 변경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2017년 제6차 이사회: 2017. 7. 12. (수) 11:30 - 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IBK기업은행 자회사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2017년도 2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주요 주주와의 거래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7차 이사회: 2017. 7. 24. (월) 10:30 - 10:4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4. 의결안건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8차 이사회: 2017. 8. 10. (목) 10:40 - 11:2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2/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준법감시인 임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집행임원 연임 승인 및 보수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9차 이사회: 2017. 9. 4. (월) 11:30 - 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회계규정 개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회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준법감시인 보수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업무집행책임자(집행 임원) 업무 분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10차 이사회: 2017. 10. 18. (수) 11:40 - 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7회계연도 3분기 여신감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차입)거래 약정 기한 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11차 이사회: 2017. 11. 20. (월) 11:30 - 12:0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7회계연도 3/4 분기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대손인정 신청 및 상각 처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12차 이사회: 2017. 12. 29. (금) 12:00 - 12:30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임효성	송석구	변상구	강일원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내부통제체계 운영 실태 점검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자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2017년 자금세탁방지 종합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임원보수규정 개정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한도거래 자금 차입 약정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본점 3층 추가 임차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다) 감사위원회

2017년 제1차 감사위원회: 2017. 01. 24. (화) 10:00 - 10: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6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6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감사위원회 직무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준법감시인 활동결과 및 활동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2017년 제2차 감사위원회: 2017. 03. 14. (화) 11:00 - 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7기 특별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제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거래여신 취급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6기 결산 감사보고서 작성 출	및 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3차 감사위원회: 2017. 04. 28. (금) 09:30 - 09:4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2017년 제4차 감사위원회: 2017. 07. 12. (수) 11:00 - 11: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IBK기업은행 자회사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거액여신 취급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2017년 제5차 감사위원회: 2017. 08. 10. (목) 10:00 - 10: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2/4분기 자금세탁 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6차 감사위원회: 2017. 09. 04. (월) 11:00 - 11:1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2017년 제7차 감사위원회: 2017. 10. 18. (수) 11:00 - 11: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거액여신 취급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2017년 제8차 감사위원회: 2017. 11. 20. (월) 11:00 - 11: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3/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회계연도 4/4분기 대손상각 책임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9차 감사위원회: 2017. 12. 29. (금) 11:00 - 11:1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8회계연도 감사계획 수립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위험관리위원회

2017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 10. 18. (수) 11:20 - 11:4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강일원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상반기 위험 종합 관리 현황 및 위험관리협의회 결의사항 보고				
4. 의결안건					
	안건 없음	-	-	-	-

2017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 12. 29. (금) 11:20 - 11:4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강일원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별 한도 전용				
4. 의결안건					
	가. 신용위험 한도 추가 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보수위원회

2017년 제1차 보수위원회: 2017. 08. 10. (목) 10:20 - 10: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석구	임효성	강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별도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1호 집행임원 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017년 제2차 보수위원회: 2017. 12. 29. (금) 11:40 - 12:0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석구	임효성	강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별도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1호 임원보수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임효성

(1) 활동내역

사외이사 임효성은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9회, 보수위원회 2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임효성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2017년 중 총 9시간 18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송석구

(1) 활동내역

사외이사 송석구는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9회, 위험관리위원회 2회 보수위원회 2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송석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2017년 중 총 9시간 58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변상구

(1) 활동내역

사외이사 변상구는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9회, 위험관리위원회 2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변상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2017년 중 총 9시간 18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강일원

(1) 활동내역

사외이사 강일원은 2017년 중 개최된 이사회 12회 중 12회에 참석하였고, 위험관리위원회 2회, 보수위원회 2회 모두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강일원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2017년 중 총 6시간 55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요약

구분 사외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시간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보수 위원회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실 적	
임효성	12	12	12	-			9	9	9				2	2	2	9시간18분
송석구	12	12	12	-			9	9	9	2	2	2	2	2	2	9시간58분
변상구	12	12	12	-			9	9	9	2	2	2				9시간18분
강일원	12	12	12	-						2	2	2	2	2	2	6시간55분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 저축은행은 임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임원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30억원이며, 연간 보험료는 8.9백만원입니다.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해당사항 없음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임효성

가)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임효성은 선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임효성은 선임시 당 저축은행 정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지배구조법 6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정관 41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라. 충실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2) 사외이사 송석구

가)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송석구는 선임 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송석구는 선임시 당 저축은행 정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지배구조법 6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정관 41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라. 충실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3) 사외이사 변상구

가)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변상구는 선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변상구는 선임시 당 저축은행 정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지배구조법 6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정관 41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라. 충실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4) 사외이사 강일원

가)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강일원은 선임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 강일원은 선임시 당 저축은행 정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지배구조법 6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정관 41조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2.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가. 전문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나. 직무공정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다. 윤리책임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라. 충실성	충족	선임시 자격 조건유지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음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되 내·외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역량·자질 및 실적 등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통해 평가가 이뤄집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 임기만료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 ② 평가 기준 : 임원 선임 심사표에 의해서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③ 평가 절차 :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하여 평가를 수행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현재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17.3.30.폐지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서 임원 선임심사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전문성, 충실성,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최초 선임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임원 선임 심사자격 등을 평가하였으며 관련자격 사항을 충족하였습니다.

3) 외부평가

가) 외부평가 개요

당 저축은행은 사외이사 평가를 위해 별도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외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 저축은행은 임효성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 저축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감사팀(감사위원회), 위험관리팀(위험관리위원회), 인사총무팀(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는 회의 일정 조정, 안건의 정리 및 통지 등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임효성

가) 재직기간 : 2015.9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30,000,000	연간금액
	상여금	해당 없음	
	기타 수당	해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 없음	
	차량제공	해당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 없음	

2) 사외이사 송석구

가) 재직기간 : 2015.10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30,000,000	연간금액
	상여금	해당 없음	
	기타 수당	해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 없음	
	차량제공	해당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 없음	

3) 사외이사 변상구

가) 재직기간 : 2016.11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30,000,000	연간금액
	상여금	해당 없음	
	기타 수당	해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 없음	
	차량제공	해당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 없음	

4) 사외이사 강일원

가) 재직기간 : 2016.11월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원)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기본금	30,000,000	연간금액
	상여금	해당 없음	
	기타 수당	해당 없음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해당 없음	
	건강검진 지원	해당 없음	
	차량제공	해당 없음	
	사무실제공	해당 없음	
	기타 편익제공	해당 없음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당 저축은행의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 체결한 계약이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이명규	`13.7.15	`16.9.4	37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한국기후변화에너지연구소장 식약청 국민법제관
한희수	`13.7.15	`15.9.4	25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새부산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권창석	`13.7.15	`14.7.14	11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주)트라이곤코리아 상무이사 (주)고컨설팅 대표이사
윤덕룡	`13.7.15	`15.9.4	25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
이진서	`14.9.5	`16.9.24	24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임효성	`15.9.5	`17.11.20	27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KT부평지사 지사장(상무보)
송석구	`15.10.29	`17.11.20	26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 보수위원회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변상구	`16.11.21	`17.11.20	13개월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회 이사
강일원	`16.11.21	`17.11.20	13개월	이사회,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사외이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가톨릭관동대학 미래전략처장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 저축은행은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3월 제4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첨부 3. 지배구조 내부규범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 저축은행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는 것,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은 원활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통한 지배구조 안정을 위해 2017.3월 이사회 내 위원회 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선임심사표에 정해진 기준 등에 따라 적격성을 점검한 뒤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정하고, 상임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후 이사회 의 심의·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최고경영자 대행자, 저축은행의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비상계획

당 저축은행은 최고경영자가 금융감독기구로부터의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거나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9조에 의거 이사회는 비상경영계획 승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경영승계 사유, 개시일자, 결정시기 등을 결정하고, 경영승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게 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 평가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관련법령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이사의 자격요건)

당 저축은행은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7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

- 평가

김성미 대표이사는 관련 법률 및 내규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또한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당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1조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으로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평가

2017년 3월 15일 선임된 김성미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서초동지점장, 반월중앙지점장을 거치면서 영업현장의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였으며, 남중지역본부장을 거쳐 개인고객본부장(부행장)을 역임하여 CEO로서 리더십과 경영역량을 쌓았습니다.

또한 당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 경험을 바탕으로 IBK금융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당 저축은행의 경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지식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 이사회는 이러한 김성미 대표이사의 경력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관련 법률 및 내규에서 정하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라 .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기존 대표이사 임상현의 사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사회는 2017년 3월 14일 2017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의 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이사회 내 위원회인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없었던 사유로 이사회가 직접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현 선임 사외이사인 임효성을 임시 의장으로 한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인 김성미의 신규 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2017년 3월 14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인 김성미가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제3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경영승계절차

운영현황>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7.03.14	최고경영자 후보의 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건 상정	제2차 이사회
2017.03.14	상임이사 선임	제1차 임시주주총회
2017.03.14	대표이사 선임	제3차 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해당사항 없음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3) 후보군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이사회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해당사항 없음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 제40조에 의거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관련 업무를 인사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7명입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의 역할은,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및 발굴, 자격검증, 그 밖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지원 등 입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인사총무팀
- 직원수 : 총7명
- 담당자 : 총괄 - 인사총무팀장 정현주 (051-791-4340),
 담당 - 과장 김동우(051-791-4341)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의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2/3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0조 제1항)

2) 구체적 역할

당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0조 제6항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 및 집행임원의 업무집행 감독

① 이사회 등 안전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의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전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감사팀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서를 통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②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업무집행에 대해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상법 § 412, 지배구조법 § 20④) 법률 및 정관에 반하는 업무집행에 대해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 402).

감사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의 변경, 예산의 전용, 채권의 포기, 제규정의 개폐 등 경영진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감사업무규정에 따라 감사팀으로 하여금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인 감사팀은 2017년 중 당 저축은행의 중요 현물감사,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외감법 § 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감사수행 전략, 감사품질 관리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는 2017년 3월 14일 당저축은행이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 승인내용 : 감사기간(FY2017 ~ FY2019), 감사보수 : 507백만원(vat 별도)

다) 상임감사위원 관련 사항

당 저축은행은 상근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상근감사위원이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부서장(감사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 제17조에 의거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점사팀장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적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검토 등

① 감사위원회의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합니다.(상법 제447조의 4,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6기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하여 2017년 3월 3일 회사로부터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감사위원회는 2017년 3월 14일 2017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에서 제6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결의 하였습니다.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은 당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6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③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부서인 점사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2017년 03월 14일 2017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및 제2차 이사회에 2016년 12월 31일 현재 당 저축은행의 재무보고 내부통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해 본 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마)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평가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2017년 제1차, 제3차, 제4차, 제7차 감사위원회 개최 시 당 저축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결과 적합한 내부통제체계와 조직을 갖추고 적절한 통제수단과 소통을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59조의2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법령에서 정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2017년말 현재 감사위원회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상구 감사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에 해당합니다.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임효성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2015.09.05	2017.11.20
변상구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6.11.21	2017.11.20
송석구	사외이사	감사위원	2015.10.29	2017.11.2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 중 총 9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어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총 32건(의결사항 5건, 보고 및 심의사항 27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은 적시에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감사팀장 등으로 하여금 각 감사위원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 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내용이 감사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7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7.01.24.(10:00)

[안전 통지일 : 2017.01.1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호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제6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6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감사위원회 직무활동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준법감시인 활동결과 및 활동계획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전 : 의결안전 없음					

보고 가. 제6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 영업점(울산지점, 동래지점, 부산중앙지점)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개인 정보보호) 결과 업무지도 1건, 시정사항 5건, 주의사항 4건, 현지조치 3건 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 제6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중입니다.

보고 다.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당저축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중인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보고 라. 감사위원회 직무활동 보고

- 2016년 하반기 중 자체 감사 실시내역,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보고 마. 준법감시인 활동결과 및 활동계획 보고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에 의거 준법감시인의 2016년도 활동결과 및 2017년도 활동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나) 2017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7.03.14.(11:00)

[안전 통지일 : 2017.03.1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제7기 특별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제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거액여신 취급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제6기 결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제6기 결산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정관 제64조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에 의거 제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적정함을 확인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결 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

- 외감법 제4조에 의거 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보고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 IT팀, 서면지점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개인정보보호) 결과 시정사항 2건, 주의사항 3건, 현지조치 3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 제7기 특별감사 결과 보고

- 여신감리업무규정 제14조에 의거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대출 취급 관련 전결권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징계(주의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보고 다. 제6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감사위원회가 당 저축은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보고 라. 거액여신 취급현황 보고

-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2017년도 1월, 2월 중 대출금액 50억원 초과 취급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다) 2017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7.04.28.(09:30)

[안전 통지일 : 2017.04.2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보고 가. 제7기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명동지점 정기감사 및 울산지점 수시감사 결과 시정사항 4건, 주의사항 1건, 현지조치 1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5조에 의거 당 저축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중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보고 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중입니다.

라) 2017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7.07.12.(11:00)

[안전 통지일 : 2017.07.05]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IBK기업은행 자회사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라.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마. 거액여신 취급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바.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영업점(대전, 대구, 마산, 진주지점)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개인정보 보호) 결과 개선사항 1건, 시정사항 6건, 주의사항 2건, 현지조치 4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5조에 의거 당 저축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중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보고 다. IBK기업은행 자회사 정기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에 의거 IBK기업은행 자회사 정기감사 결과(현지조치 1건, 지도사항 3건, 권고사항 3건)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내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라.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 2017년 상반기 중 자체 감사 실시내역,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보고 마. 거액여신 취급현황 보고

-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2017년 2분기 중 대출금액 50억원 초과 취급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바.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중입니다.

마) 2017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17.08.10.(10:00)

[안전 통지일 : 2017.08.0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호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전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2/4분기 자금세탁 방지업무 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에 의거 감사본부장 면직 및 검사팀장 임명에 대한 동의를 결의하였습니다.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본부(심사팀, 영업기획팀) 정기감사 및 영업점(부산중앙지점, 울산지점) 수시감사 결과 개선사항 2건, 시정사항 3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 2017회계연도 2/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중입니다.

바) 2017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17.09.04.(11:00)

[안건 통지일 : 2017.08.3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본부(여신관리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개인정보보호) 결과 시정사항 2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 2017년 제7차 감사위원회 : 2017.10.18.(11:00)

[안건 통지일 : 2017.10.1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특이의견 없음			
다. 거액여신 취급 현황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 의결안건 없음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영업점(영업부, 동래, 부산중앙, 하단, 울산지점)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개인정보 보호) 결과 시정사항 8건, 주의사항 3건, 현지조치 5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보고

- 당 저축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중인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보고 다. 거액여신 취급현황 보고

- 감사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거 감사위원회에 2017년 3분기중 대출금액 50억원 초과 취급 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아) 2017년 제8차 감사위원회 : 2017.11.20.(11:00)

[안전 통지일 : 2017.11.14]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나. 2017회계연도 3/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7회계연도 4/4분기 대손상각 책임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2017회계연도 4/4분기 대손상각 책임 심의

- 대손상각 대상 대출채권(총 981건, 4,707백만원) 책임 심의 결과 전부 책임 없음으로 심의 완료함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준법지원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전 영업점), 수시감사(개인정보보호) 결과 시정사항 2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보고 나. 2017회계연도 3/4분기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사 결과 적정하게 운영중입니다.

자) 2017년 제9차 감사위원회 : 2017.12.29.(11:00)

[안전 통지일 : 2017.12.22]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임효성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2018회계연도 감사계획 수립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2018회계연도 감사계획 수립 보고

- 2018회계연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득하였습니다.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자체감사 결과 보고

- 본부(인사총무팀, 위험관리팀)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개인정보보호) 결과 시정사항 5건으로 중대한 지적사항 발견은 없었습니다.

3) 평가

당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2017년말 기준 감사보조조직인 검사팀은 검사팀장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내용을 검사팀장 보고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감사위원회 총 9회 개최)

7. 위험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 저축은행의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구체적 역할

당 저축은행의 위험관리위원회는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준 제20조의2(위험관리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위험관리위원회는 전사 위험관리 전략 수립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의2 3항 1호)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위험관리위원회는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의2 3항 2호)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를 승인 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의2 3항 3호)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승인 합니다.
(위험관리기준 제20조의2 3항 7호)

마) 기타

기타로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구성(위험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 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강일원	사외이사	위원장	2017.3.30.	2017.11.20
변상구	사외이사	위원	2017.3.30.	2017.11.20
송석구	사외이사	위원	2017.3.30.	2017.11.20

* 임기만료 후 후임자 미정으로 직위 유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 중 위험관리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의결 1건, 보고 2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2017년 제1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 10. 18. (수) 11:20 - 11:4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강일원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17회계연도 상반기 위험 종합 관리 현황 및 위험관리협의회 결의사항 보고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안건 없음	-	-	-	-

보고 가. 2017회계연도 상반기 위험 종합관리 현황 및 위험관리협의회 결의 사항 보고

- 위험관리책임자는 매 정기 위원회 개최시 반기말 현재 위험 및 목표 관리를 포함한 종합관리현황과 대응전략 및 협의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2017년 상반기 위험은 적정 관리 중으로 위험관리협의회는 의결 9건, 보고 6건 총 15회 개최하였습니다.

2017년 제2차 위험관리위원회: 2017. 12. 29. (금) 11:20 - 11:40

항목		위원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강일원	변상구	송석구	
2. 참석여부 및 (불참) 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위험별 한도 전용	특이의견 없음			
4. 의결안건					
	가. 신용위험 한도 추가 설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 가. 신용위험 한도 추가 설정

- 대출실적 호조 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17년도 신용위험 한도 소진中. 이에 영업활동 확대, 신규시장 확보 등 업계 경쟁력 유지 및 지속성장의 기반마련을 위해 신용위험한도 40억원, 신용위험가중자산 500억원 추가 설정을 승인 하였습니다.

보고 가. 위험별 한도 전용

- 2017.10.31. 위험관리협의회에서 적정한도 관리를 위하여 시장위험한도 4억원을 금리위험 한도 전용을 의결 하였으며 2017년 위험한도 설정 관리기준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사후 보고하였습니다.

3) 평가

당 저축은행은 위험관리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8. 보수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당 저축은행은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운영 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 저축은행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가)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사항을 승인 합니다.(보수위원회 제5조 1항 1호)

나)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등의 보수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
(보수위원회 제5조 1항 2호)

다)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경영진 등의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사항에 대한 승인을 합니다.(보수위원회 제5조 1항 3호)

라)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등에 관한사항을 승인합니다.(보수위원회 제5조 1항 4호)

마)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사항을 승인합니다.
(보수위원회 제5조 1항 5호)

바)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임원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에 관한사항을 승인합니다.(보수위원회 제5조 1항6호)

사)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보상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등에 관한사항을 승인합니다.
(보수위원회 제5조 1항 7호)

나. 구성(보수위원회위원)

1) 총괄

보수위원회는 이사중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원 사외이사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송석구	사외이사	위원장	2017.3.30.	2017.11.20
임효성	사외이사	사외이사	2017.3.30.	2017.11.20
강일원	사외이사	사외이사	2017.3.30.	2017.11.20

* 임기만료 후 후임자 미정으로 직위 유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7년 중 보수위원회는 총2회 개최되었으며, 의결2건, 총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7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17.8.10.(목) 10:2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석구	임효성	강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별도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1호 집행임원 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1) 집행임원 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

- 경영지원본부장 연임에 따른 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하였습니다.

나) 제2017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17.12.29.(금) 11:40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석구	임효성	강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별도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1호 임원보수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의결안건1) 임원보수 규정 개정

-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경영인센티브1%를 기본연봉에 반영하기 위해 임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3) 평가

당 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 저축은행은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운영 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저축은행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이사회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17년 3월부터 운영되어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속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위원회규정』에 제12조에 의거 하여 위원회의 안전,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저축은행 보수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거 2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당저축은행의 보수위원회는 총3인(사외이사 송석구, 임효성, 강일원)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석구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대표로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송석구 이사, 강일원 이사는 현재 당 저축은행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로 보수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송석구	사외이사	위원장	`17.3.30.	`17.11.20
임효성	사외이사	사외이사	`17.3.30.	`17.11.20
강일원	사외이사	사외이사	`17.3.30.	`17.11.20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규정』에 의거 하여 당 저축은행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저축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 저축은행 보수위원회는 2017년 8월 10일 개최된 제1회 보수위원회에서 집행임원에 대한 기본급과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를 결정하고 보수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당 저축은행 보수위원회는 2017년 12월 29일 개최된 제2회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보수변경에 따라 관련 임원보수규정 개정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는 2018년부터 심의하고 의결될 예정입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2018년부터 심의하고 의결될 예정입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현재 당 저축은행 경영진의 보상체계가 당 저축은행 전체의 재무상황, 특히 손익규모 및 자본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당 저축은행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자회사로서 정부의 예산지침 등의 범위 내에서 지배구조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당 저축은행 소속 상임임원 및 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9) 임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 저축은행의 임원 등은 리스크와 연동 없이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어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현재 송석구 사외이사)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일 7일전에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7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합니다. 2017년도 결의사항 중 별도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당 저축은행 보수위원회는 2017년도에 최초로 운영되었으며, 경영진에 대한 보상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7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회의일 : 2017.8.10.(목) 10:20

- 안건 통지일 : 2017.8.9.(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석구	임효성	강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별도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1호 집행임원 보수 및 지급방식 결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제2017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회의일 : 2017.12.29.(금) 11:40
- 안건 통지일 : 2017.12.27.(수)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송석구	임효성	강일원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별도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1호 임원보수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4) 평가

당 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수위원회에서는 보수위원회 심의·결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보수위원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체적 점검항목에는 보수위원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전문성 보완 수준, 위원회 소집절차 및 사전 안건제공수준, 위원회 개최빈도 및 시간의 적정성, 현안에 대한 심의 의결의 적시성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보수위원회 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고 이 모든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임원의 경우 재무지표로는 전사 재무성과로서 수익성 지표(당기순이익, 총당금적립전이익 등), 건전성 지표(BIS비율, 연체비율 등), 생산성 지표(총대출순증 등)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매년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하는 ‘MOU 전략과제 이행률’, ‘자산건전성 제고 및 리스크관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당 저축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에 의거하여 단년 예산 원칙에 따라 성과보상액을 이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당 저축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는 현금성 예산으로 배정됨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 저축은행은 내부적으로 경영실적 평가지표 등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 저축은행은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경영성과급, 기타수당(직무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 저축은행은 『보수위원회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의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17년의 경우 보수위원회 요청에 의한 별도의 외부전문가 자문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 저축은행은 모행인 중소기업은행과의 예산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통제 받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대하여 보상체계의 연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관련 보험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해당사항없음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 (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 (A/B)		
전년도 (2016년)	64.8	133	48.7%	136	0.50
당해년도 (2017년)	71.2	195	36.5%	139	0.53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상임	비등기임원	관리자	책임자	행원 등
전년도 (2016년)	보수총액	3.9	3.6	15.4	22.8	19.1
	성과보수액	1.3	1.3	0.8	1.5	1.3
당해년도 (2017년)	보수총액	3.9	3.7	17.6	25.8	20.2
	성과보수액	1.4	1.3	1.1	1.6	1.2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6년)	임원	10	4.2	2.3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7	3.6	1.3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주1)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 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 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16년)	임원	2.3	2.3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1.3	1.3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
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6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6년)	임원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 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6년)	임원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	-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6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6년(t기) 발생분, 2015년(t-1기) 발생분, 2014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 원)

구분		이연보수액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전년도 (2016년)	임원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 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6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당해년도 (2017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	-	-

주)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이사회 규정
- 첨부3. 지배구조 내부규범
-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 규정
- 첨부6. 보수위원회 규정
- 첨부7. 위험관리기준

정 관

내규분류	조직경영-규정1
소관부서	준법지원팀

2011. 10. 11. 제정
2011. 10. 13. 개정
2011. 11. 17. 개정
2012. 09. 24. 개정
2012. 10. 12. 개정
2013. 02. 07. 개정
2013. 07. 15. 개정
2013. 08. 14. 개정
2014. 03. 24. 개정
2015. 06. 30. 개정
2016. 10. 26. 개정
2017. 03. 3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저축은행은 주식회사 IBK저축은행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BK Savings Bank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상호저축은행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10.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12. 부동산임대업무
1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14.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5.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18.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9. 제1호 내지 제17호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제3조(영업구역) 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대구광역시·경상북도·강원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 로 한다.

제4조(사무소) ①이 상호저축은행의 주된 사무소(본사)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②이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공고의 방법) ①이 상호저축은행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bksb.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에서 발행되는 부산일보에 한다.

제6조(업무방법서)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 업무방법서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이 업무의 종류 및 그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표준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자본금과 주식

제7조(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2,000,000주로 한다.

제8조(1주의 금액) 이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이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0조(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상호저축은행이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11조(주권의 종류) 이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2조(신주인수권) ①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상호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 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 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 또는 이사가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5조(주주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상계금지) 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는 주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상호저축은행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②전항의 규정은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4.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제18조(주주명부의 효력) ①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한다.

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9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상호저축은행의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이 상호저축은행은 임시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질권의 등록) ①상호저축은행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호저축은행 소정의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는 상호저축은행의 주주명부 및 주권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이미 설정된 질권이나 신탁재산의 표시의 말소 또는 전질이나 질권이 동의 등록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21조(권리자의 신고) ①주주,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인감 또는 서명을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공증에 의한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법정대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주권의 오손 및 상실과 재교부) ①주권을 오손하였을 때에는 상호

저축은행에 구주권을 제출하고 신주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첨부한 주권의 진위를 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손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의 상세한 설명 또는 확실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3조(사채의 발행)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24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3. 이사의 임면
4. 자본의 감소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6. 결산 및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 중요한 사항
7.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
9.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5조(소집시기) ①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6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주주의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 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32조(의결권 제한) ①이 상호저축은행,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

다.

②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2이상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외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제3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이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이사 · 이사회

제39조(이사의 수) ①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②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한다.

제40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선임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사외이사 자격기준)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고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내에 5년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42조 <삭제>

제43조 (업무집행책임자)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집행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받아 집행한다.

②업무집행책임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제44조(이사의 임기) ①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사외이사, 기타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본조 각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5조(이사의 보선)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39조에 정하는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9조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미달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회의 결의로 저축은행장(대표이사), 부저축은행장(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저축은행장(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47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상호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저축은행장(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

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이사회의 권한) ①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주주총회 관련사항】

1.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 1의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2의2.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3.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일반경영 관련사항】

4.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7. 대출운용기준 등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임원 관련사항】

8. 주요 규정·기준의 제·개정 또는 폐지
9. 상법 제397조 내지 제398조에 의한 이사의 경업거래, 겸직, 회사의 사업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및 이사 등의 자기거래 승인
10. 이사회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 선임 및 해임
- 10의2.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10의3. 대주주·임원 등과 이 상호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자본조달 및 자본금 관련사항】

12.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3.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14. 자산 재평가

【기타사항】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6.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7.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18. 본점의 이전, 지점(출장소) 설치, 이전 및 폐지
 19.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20. 자회사의 설립(인수) 및 매각
 21. 주주총회 위임사항
 22.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1. 지배인 선임·해임
 2.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제49조(이사회 소집)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 결의로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가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다.

③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⑥이사회 소집 통지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의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안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⑧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7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제50조(이사회 결의 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이사회 결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하지 못한다.

제51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2조 <삭제>

제53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책임) ①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

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4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의 면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제55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상호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3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주주의 유지청구권 및 대표소송) ①이사가 법령, 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고문) 이 상호저축은행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금규정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내 위원회

제59조(이사회내 위원회)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내 위원회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소집,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9조의1(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이 상호저축은행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

제59조의2(감사위원회) ①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2/3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②감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

회는 제59조의1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총수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④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⑤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주주는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해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에 맞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맞도록 조치한다.

⑧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⑨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

제59조의3(위험관리위원회) ①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위험관리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59조의4(보수위원회) ①보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보수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③보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6장 회 계

제63조(사업연도) 이 상호저축은행의 매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승인, 공고) ①이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위원회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의 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이익금의 처리) ①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66조(이익의 배당) ①상호저축은행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금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금액의 액
4.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②상호저축은행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7조(중간배당) ①이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66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이하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의 적립된 법정적립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 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68조(회계규정) 이 상호저축은행의 회계처리는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가 제정하는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69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상호저축은행에 귀속한다

제70조(외부감사인의 선임) 이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7장 보 칙

제71조(법령 적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저축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2조(정관의 변경) 상호저축은행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상호저축은행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기인) (삭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10.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10.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11.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09.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10.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02.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07.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08.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03.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06.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 63조의 개정규정은 2015.07.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10.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03.30.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규정

2011. 10. 27 제정

2013. 07. 15 개정

2015. 05. 20 개정

2017. 03. 30 개정

2017. 09. 04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주식회사 IBK저축은행 정관(이하 정관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및 구성) ① 이사회는 법과 정관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당 회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이사(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3조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의장에게 그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할 때 또는 각 이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회의 1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구두로서 통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⑥ 회의 장소는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⑦ 의장 및 소집권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이사 중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직무대행이 된다.

1. 선임사외이사
2. 사외이사 중 최우선 선임자
3. 사외이사 중 연장자

제4조 (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의결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의 수립, 변경, 평가
2. 예산(이사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변경
4. 이사회규정,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규정, 위험관리위원회, 경영협의회규정, 취업규칙, 기타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다만,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나 자구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주주총회 소집 및 안건의 결정
6.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7.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8. 집행임원의 임면

9.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를 제외한다)위원 선임 및 해임

10.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의 보수 기타 보상의 결정

11. 주식 및 채권의 발행 결정

12. 자본금 변경, 제준비금 자본전입

13. 자산 재평가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15.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16.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수의 결정

17. 본점의 이전, 지점 설치·이전·폐쇄

18. 저축은행의 자기주식 취득

19. 중요한 계약 및 소송, 중요한 차입,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이상 고정자산 매입 또는 투자유가증권 매입 등

20. 건당 10억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동·부동산의 취득 및 매각(용역계약 포함)

21. 채무면제의 건 단, 대출규정, 연체급부금 및 연체대출금관리규정, 직무전결 규정의 전결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

22. 대손인정 신청의 건 단, 자체상각 대상 채권에 한하며, 타 법령 등에 의해 면책 결정 또는 면책대상인 채권의 상각은 직무전결규정의 전결기준에 의함.

23. 보수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추가적인 성과급, 시간외 수당 등 특수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

2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그 밖의 법령, 정관, 규정 등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이외에 저축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경영협의회에 위임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보고사항

1. 종합적인 경영분석 보고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 사항을 정한 사항
3.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의 청취)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 구성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9조 (준수사항) 이사는 법령, 정관, 규정 및 제규칙을 준수하고 회사의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인 영리행위나 기타 보증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항상 청렴결
백하여
직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지배구조내부규범

내규분류	조직경영-규정10
소관부서	경영기획팀
재·개정 전결권자	이사회

2017. 3. 3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IBK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주주와 예금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 ①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저축은행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정 등) 이 규범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저축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상호저축은행법, 지배구조법,

상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고, 그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 정관, 이사회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구성 현황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6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제2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7조(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지

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사외이사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1.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저축은행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전문경영인(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2. 정규대학 교수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4. 최근 10년 내에 5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책임

제9조(이사회 권한)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 임원 등과 저축은행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종합경영분석
 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이사회 및 의장이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지배구조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10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저축은행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저축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저축은행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는 저축은행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저축은행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

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저축은행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축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2조(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 퇴임사유 및 절차) ① 이사의 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관련 법률, 정관 등에서 정한 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경우

②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일 1주간 전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그 소집 회수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한다.

제16조(의결권 행사 방법) ① 이사회 의결은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제1항의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출석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그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연간 활동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는 자기평가, 저축은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종류·구성·기능

제18조(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 ①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이사회내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저축은행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감사위원회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의결은 그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이 규범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대표(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로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 규범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및 소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 후보는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6항 후단 및 제7항을 적용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그 역할 및 권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⑦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감사위원에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저축은행이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험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험관리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1주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2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② 보수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 ③ 보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2절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한다.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재선임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4조(임원별 자격요건) ①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사외이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적용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및 업무집행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저축은행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절 임원의 권한·책임

제25조(이사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저축은행은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한다. 대표이사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저축은행의 업무를 분장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 등의 권한과 책임) 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진다.

제27조(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 ① 준법감시인은 저축은행이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 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29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의 의결로 선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 제2항을 적용한

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④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의 내규 등에 따른다.

제31조(임원의 퇴임) ①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로 해임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되, 동일 순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선임자(선임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퇴임한다.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 및 이사회의 해임 결의로 퇴임한다. 이 경우 해임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⑤ 업무집행책임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2조(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① 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의 경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3조(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 ① 저축은행은 사내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저축은행은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34조(임원 성과평가 등) ① 임원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임원의 담당업무 성과 등에 연동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임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임원의 임면, 보수지급 등에 활용한다.

제35조(보수의 지급) ①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체계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평가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보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촉(또는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6조(경영승계 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년(또는 매 사업연도) 1회 이상 경영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7조(경영승계 절차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시기) ① 최고경영자(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경영승계 절차(이하 "경영승계 절차"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개시된다.

1.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2. 최고경영자의 사임, 해임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제7조 및 제8조의 임원

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이사회가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결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임기 만료 30일 전

2. 제1항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후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영승계 절차 개시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제38조(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선임 예정자의 중대한 결격사유 발생 또는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저축은행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저축은행 운영 및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비상상황 발생시 비상계획) ① 최고경영자가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지체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7조의 경영승계 절차에 준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40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인사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사담당 부서는 제1항의 업무 추진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41조(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저축은행의 비전을 공유하며, 금융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쉽과 경영혁신 마인드 등을 두루 갖춘 자여야 한다. 다만,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42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저축은행,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3조(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4조(최고경영자의 임기 및 역할 등) ①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이사회 의 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저축은행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관련법령 및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최고경영자의 퇴임 및 평가) ① 최고경영자의 퇴임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적용한다.

②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범이 정한 사항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하여는 지배구조법 부칙 제2조 내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부칙이 정하는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내규분류	조직경영-규정9
소관부서	인사총무팀
재·개정 전결권자	이사회

2017. 03.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이비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대표집행임원에 대한 후보자를 심사·선정하여 추천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선임 시부터 이사 임기만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한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 등을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

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결사항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표이사·사외이사 후보군관리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결의방법) ①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 후보 추천시에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결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받은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8조(추천절차 및 자격검증) ①위원회는 후보군 탐색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저축은행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보가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①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경과, 결과, 반대하는 구성원과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축은행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서 및 간사) ①위원회의 지원부서는 인사총무담당부서로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총무담당 부서장이 담당하며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지원부서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와 위원회 운영 지원을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규정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감사위원회규정

내규분류	감사-규정2
소관부서	검사팀
재·개정 전결권자	이사회

2013. 07. 15. 제정

2017. 08. 11.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IBK저축은행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는 IBK저축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무감사, 업무감사, 준법감사, 경영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되는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외부감사인 선임의 승인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기타 감독기관 지시,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원칙적으로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구 성

제8조(선임 및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

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신설 2017.8.11.>

③위원회 위원은 집행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9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권한위임) ①감사위원의 미착임,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상근감사위원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상근감사위원이 전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간사 또는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이를 대행하고 즉시 상근감사위원의 추인을 받는다.

③일상감사사항 등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위원에 위임된 사항은 상근감사위원이 전결처리하고 당해 기간에 전결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정기위원회에서 보고한다.

④일상감사대상 이외의 서류중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상근감사위원이 공람한다.

⑤상근감사위원이 없을 경우 전 ①~④항에 대해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장 회 의

제11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절차)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소집절차)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②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결의방법)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성립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7.8.11>

③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의사항)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결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라. 영업보고 청구
마.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바.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가. 감사계획의 수립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다. 내부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라. 외부감사인인 선임의 승인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사항

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
한 사실의 보고사항

사. 외부감사인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아.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자. 감사업무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

4. 기타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사항

1. 감사에 관한 사항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라. 회사의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마.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바.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

사.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아.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자.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2. 기타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 및 보고

제17조(상근감사위원의 위임) ①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근감사위원에게 위임하며, 상근감사위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감사부서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③상근감사위원이 없을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①상근감사위원은 전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근감사위원이 없을 경우 감사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보조조직) ①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보조조직을 둔다.

제21조(감사록의 작성) ①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보수위원회 규정

내규분류	인사총무-규정18
소관부서	인사총무팀
재·개정 전결권자	이사회

2017. 03. 3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사의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보상체계의 설계와 운영을 감시한다.

② 위원회는 회사의 성과보상관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성과보상체계가 재무상황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경영진”이라 집행임원 또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리스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업무담당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판매·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원회가 결의한 직원을 의미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들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장이 부재 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인 위원의 임기는 연

속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시점의 불일치, 재임 제한시
위원회 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의·결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하
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3.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지급에 관한 연차보
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보상 체계의 설계·운
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수위원회의 심의·결의 대상인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6.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관한 사항
7. 보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8.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결의사항을 부의할 경우 위험관리 및 준법지원 부서가
보상관련 위험을 적절히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 회사의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및 보상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7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 7일전까
지 각 위원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컴퓨터통신, 인
터넷 e-mail등)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외부자원의 활용) 위원회는 소정의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부서 및 의사록 작성) ① 인사담당부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에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

유를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위험관리기준

내규분류	재무위험-지침2
소관부서	위험관리팀
재·개정 전결권자	이사회

2016. 11. 01. 제정

2017. 02. 01. 개정

2017. 03. 3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당행이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라 함은 당행의 경영전반에서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이라고 정의한다.
2. 신용위험 : 채무자의 부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3. 시장위험 :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서의 불안한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 재무손실을 말한다.
4. 금리위험 : 시장위험 중 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회사의 순이자소득의 변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5. 가격위험 : 시장위험 중 금리, 주가, 환율의 변동에 의해 시장성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말한다.
6. 유동성위험 : 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부채의 만기 도래시 원리금을 상환할 재무자원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비용으로만 재무자원이 조달 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7. 운영위험 :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8. Total Exposure(총위험자산노출) : 특정거래처별 대출금, 지급보증, 유가증권, 예치금, 장외파생상품, 외환거래 등 직·간접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9. 고위험자산·부문 : 경기변동, 과잉투자 등의 이유로 향후 산업전반의 침체가 예상되거나,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내재된 실질 위험 파악이 어려운 자산·부문을 말한다.
10. 위험관리한도 :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손실로부터 당행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IBK금융그룹 전체 위험관리한도 설정에 따라 자회사에 배정된 위험 종류별 사전 최대손실금액 등을 말한다.
11. 손실허용한도 : 발생한 손실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합산금액을 일정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전 설정된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행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위험관리조직) ① 위험의 총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위험관리조직을 상설하여 운용한다.

② 위험관리 조직은 반드시 영업조직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당행의 위험관리조직은 위험관리책임자,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험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리스크관리본부로 구분하며 각 조직의 역할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로서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제1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회는 위험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협의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위험관련 주요 제도 및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제3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리스크관리본부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관리 전담조직으로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5장 제4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험관리 기본방침

제5조(위험관리 목표) 위험관리의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가치 창출의 극대화와 당행의 자본 보호
2. 전략사업 및 재무목표 달성의 촉진
3. 수익 및 적정 자본금 수준의 관리와 수익 및 위험의 최적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도모
4. 적정 신용등급의 유지
5. 적절한 위험 분산화
6.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명확화와 위험을 감안한 성과평가 지원

제6조(위험관리 원칙) 위험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자본을 감안한 적정 위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험관리 조직과 보고체계는 영업부문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견제와 균형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위험 허용한도는 당행의 수익 창출능력과 자기자본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위험의 측정, 평가 및 보고는 통일된 지표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특정 부문에의 과도한 위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여야 한다.

6. 위험관련 전산기술은 종합위험 관리체계 구현을 위하여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관리 역할과 책임) 부서 또는 사업부문이 위험관리에 관한 적절한 관리능력과 체제를 갖춘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로 일부 역할과 책임을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관리

제8조(위험관리 대상) ①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에 각종 거래 과정에서 자기자본 또는 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인 위험을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운영위험 등을 감안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험의 종류를 정하며, 당행의 위험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위험

- 가. 일반여신 : 대출금, 지급보증 등 모든 신용공여
- 나. 유가증권 : 자금지원을 위한 매입 유가증권
- 다. 기타 자금 거래 : 예치금 등

2. 시장위험

가. 금리위험

- 1) 금리부자산과 금리부부채의 갭(GAP)

나. 가격위험

1) 유가증권 : 자금운용을 위해 매입한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

- 2) 기타 중도매각채권 및 시가평가 대상자산

- 3) 외환포지션

- 4) 파생 금융상품거래

3. 유동성위험

- 가. 경영활동을 위하여 조달, 운용되는 자금

4. 운영위험

가. 임직원의 모든 업무처리

5. Total Exposure

가. 동일인(법인개별차주) 한도

나. 동일그룹 한도

다. 연대보증, 지급보증, 채무인수, 원리금 자금보충, 책임분양(원리금 범위), 이자지급보증 등 간접 Exposure. 단.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등) 제외

라. 산업별 Exposure

6. 고위험자산·부문

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자산

제9조(위험관리 절차) 위험관리는 위험 인식, 측정, 관리, 모니터링 및 통제, 보고의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험 인식) 위험관리책임자 등 위험관리 담당자(이하 “위험관리담당자”라 한다)는 당행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위험을 파악 분석한다.

1. 신용위험

2. 시장위험

3. 유동성위험

4. 운영위험

5. Total Exposure

6. 고위험자산·부문

제11조(위험 측정) 위험관리담당자는 제10조(위험인식)에서 인식한 종류별 위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측정한다.

1. 위험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2. 위험측정은 위험별 특성에 적합하게 측정방법을 정하고, 이를 해당 위험 측정모형에 구현하여 측정한다. 다만, 정량적인 측정방법의 부재로 위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3. 정기보고를 위한 신용, 시장 및 금리위험 정량적 평가방법은 “금융감

독원 은행업 표준방법”으로 한다.

4. Total Exposure 측정을 위한 Exposure는 「별표1:위험별 허용한도」에 의거 잔액(한도여신의 경우 한도 약정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2조(위험 관리) 위험관리담당자는 제10조(위험 인식)에 따른 종류별 위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용위험

- 가. 여신과 유가증권,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 하여야 한다.
- 나. 여신과 유가증권,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고, 편중 운용을 피하여야 한다.
- 다. 여신심사부문에 제한적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시장위험

가. 금리위험

- 1) 금리부 자산·부채는 갭(GAP)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갭(GAP)한도는 안정성·수익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나. 가격위험

- 1) 유가증권, 외환포지션 및 파생금융상품은 각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유가증권, 외환포지션 및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감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3) 가격위험과 관련된 거래는 시가에 의한 손익평가를 하여야 한다.

3. 유동성위험

- 가. 유동성비율을 월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기간별 유동성 전망분석의 정기적 시행
- 다. 유동성위기 발생시 「별표4:유동성위기 비상계획」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4. 운영위험

- 가. 업무처리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담당자의 과실이나 부정확한 기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고 효과적

으로 명확한 업무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5. Total Exposure

- 가. 동일인(법인개별차주) 한도를 자기자본의 50%이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단, 동일인한도 직접공여는 10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나. 동일그룹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이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단, 동일그룹한도 직접공여는 10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다. 한도 산정시에는 간접 Exposure¹⁾를 포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라. 산업별 T/E한도는 「별표2:산업별 익스포저 한도」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1) 간접 Exposure의 범위: 연대보증, 지급보증, 채무인수, 원리금 자금 보충, 책임분양(원리금 범위), 이자지급보증 등 단, 집단대출(중도금대출 등) 제외

6. 고위험자산·부문

- 가. 고위험자산·부문 한도는 「별표2:산업별 익스포저 한도」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 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자산·부문을 협의회에 부의하여 보고한다.
- 다. 위험관리부서장은 선정된 고위험자산·부문을 분기별로 변동 및 관리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한다.
- 라. 위험관리부서장은 고위험자산·부문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추가 지정 및 해제 사유 발생 시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3조(위험 모니터링 및 통제) ① 위험관리담당자는 위험한도 대비하여 위험부담액 등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한다.

② 위험관리담당자는 한도 초과시 그 원인 및 대책을 수립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고 또는 관련 협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 보고) ① 개별 위험관리 실무 부서장은 협의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위험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부서장은 위험이 한도이내에서 적정하게 운용·유지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월별 위험관리 현황과 목표관리 상황을 위험관리책임자 및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매 정기 위원회 개최 시 반기 말 현재 위험 및 목표 관리를 포함한 종합 관리 현황과 대응전략 및 협의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험관리 비상 상황) ① 금융사고, 긴급 상황 등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는, 임직원과 위험관리 담당자는 단계별 결재라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결재권자에게 위험현황을 보고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결재권자는 그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위험수준 등

제16조(위험수준) 당행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수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설정한다.

1. IBK금융그룹 전체 위험관리한도 설정 및 운영기준에 따라 모행 유관 부서와 협의한 위험종류별 위험부담 및 한도설정
2. 모행 요구수익률과 이에 따른 위험 회피 성향을 반영
3. 당행의 전략, 사업목표, 수익성 목표 및 자본수준과의 조화
4. 신규 사업 시 필요한 자본량 또는 확률 예상치를 넘어서는 손실에 대비한 완충 자본의 적정 규모
5. 기타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환경의 변화

제17조(적정투자한도 등) 위원회는 당행의 위험성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정투자한도, 손실허용한도를 정한다.

1. 개별 위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측정수단에 의한 한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

- 회에서 결정한 총 위험한도 내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2.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 부담한도·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3. 측정가능한 위험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4. 연 1회 이상 설정하여 관리하고 경영환경 및 영업전략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위험관리 조직

제1절 위험관리책임자

제18조(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1명 이상으로 하고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임하며, 효과적으로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는 경우에 관련 사실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위험관리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①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3. 위험관리정보시스템 운영
4. 이사회, 임원,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를 적시에 제공
5.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하다고 이사회, 위원회 및 협의회가 정한 사항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하여 임직원이 위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면 대표이사 및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0조(위험관리책임자의 독립성 확보) ① 위험관리책임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 외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험관리책임자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당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관리위원회

제20조의2(위험관리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사 3명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으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 선임자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5.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이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단, 제3절 위험관리협의회 및 제4절 리스크관리본부 운영 기준의 개정, 단순 자구수정, 별표 양식변경, 조직변경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변경 등

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승인 및 협의회의 결의로 결정할 수 있다.)

8. 그 밖에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며, 이 경우 정기 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고 임시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결의한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위험관리책임자로 하며, 위원회의 결의 내용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각 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⑧ 의사록에는 부의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및 찬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⑨ 의사록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절 위험관리협의회

제20조의3(위험관리협의회) ① 협의회는 리스크관리본부장, 영업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영업기획팀장, 인사총무팀장, 경영기획팀장, 심사팀장 등 7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리스크관리본부장, 간사는 위험관리팀장으로 한다.

② 위험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별 한도 전용(위험량, 위험가중 자산 한도)
2. 개별 위험관리 부서별 한도 배분 및 전용(위험량, 위험가중 자산 한도)
3. 위원회에서 결정한 한도 내의 투자 및 손실허용 한도 운용
4. 여·수신 금리기준 결정 및 금리체계 결정
5. 종합자금 수지계획 결정
6. 신상품 도입에 관련된 사항

7. Total Exposure 운용에 관한 사항
8. 고위험자산·부문 운용에 관한 사항
9. 「별표3:위험관리협의회 세부 심의안건」과 부서간 협의가 필요하여 소관 부서장이 요청한 사항
10. 기타 규정 및 협의회 등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1/2이상의 발의 또는 의장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⑤ 협의회 결의 내용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의사록에는 부의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및 찬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의견을 기재하는 위원별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의사록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리스크관리본부

- 제20조의4(리스크관리본부)** ①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당행 리스크관리본부의 조직 및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 리스크관리본부장, 위험관리부서장, 위험관리담당자
 2. 업무 :
 - 가. 위험관리 업무의 종합 기획
 - 나. 위험의 파악·분석·측정 및 통제를 위한 위험관리기법 및 위험관리시스템의 개발
 - 다. 개별 위험관리 부서의 위험관리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관리현황 수
- 보
- 라. 위험관리현황과 목표관리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정기 보고
 - 마. 위원회 및 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여부 점검 및 실무보조
 - 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 지원
아. 기타 위험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제6장 임직원 준수사항 등

- 제21조(임직원 준수사항 등)**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험 관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하면 감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장 기타

- 제22조(개별 위험관리)** ① 개별 위험관리 실무부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위한 세부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당행 개별 위험관리는 다음의 부서에서 담당한다.
1. 신용위험 : 심사팀, 여신관리팀, 영업기획팀
 2. 시장위험 : 경영기획팀
 3. 유동성위험 : 심사팀, 경영기획팀, 영업기획팀
 4. 운영위험 : 감사팀, 준법지원팀, 영업기획팀
 5. Total Exposure : 위험관리팀
 6. 고위험자산·부문 : 위험관리팀

- 제23조(장부외거래 작성 등)** ①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 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상대방·규모·조건·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다른 회사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부외거래기록을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산기준 충족 시까지 협의회를 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스크관리본부장에 관한 경과조치) 리스크관리본부장의 선임시까지 위험관리협의회 의장은 영업본부장이 그 직무수행을 대행한다.

별표1)

위험별 허용한도

구 분	대 상		부담한도 / 거래한도
신 위 용 협	차입한도		자기자본의 3배이내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법인	자기자본의 20% 이내 최대 100억원
		개인사업자	자기자본의 20% 이내 최대 50억원
		개인	자기자본의 20% 이내 최대 8억원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25% 이내
	거액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10% 초과 여신합계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
	업종별신용공여한도		(가) 부동산 PF대출 : 신용공여 총액의 20% 이내 (나) 건설업 대출 : 신용공여 총액의 30% 이내 (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신용공여 총액의 30% 이내
			(가)+(나)+(다) = 총대출의 45%이내
(라) 대부업 대출 :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 (마) 대부업 대출 中 금전대부업 : 신용공여 총액의 5% 또는 300억 중 적은금액			
시 위 장 협	유가증권 보유한도		· 주식의 합계 : 자기자본 50%이내 · 동일회사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 : 자기자본의 20%이내 ·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 : 자기자본의 5%이내 ·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회사채의 합계 : 자기자본의 10%이내 · (구)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 자기자본의 10%이내
	유가증권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 (단, 투자제한을 받지 않는 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않음)		
유동성 위 협	유동성비율 : 100%이상		

별 표2)

산업별 익스포저 한도

(단위: %)

산업분류	신용공여 대비	비고
부동산PF	20%	고위험자산·부문
건설업	30%	고위험자산·부문
부동산업 및 임대업	30%	고위험자산·부문
부동산관련업종 포괄여신한도	45%	
기타제조업	25%	
금융업	20%	
대부업	5% 또는 300억원 중 적은 금액	고위험자산·부문
도소매업	15%	
운수업	15%	
기타서비스업	30%	
기타	10%	

1) 개인대출(개인신용, 주택담보대출 등)은 산업별 T/E 관리대상에서 제외

별 표3)

위험관리협의회 세부 심의안건

심 의 안 건	내 역	관련 위험
시설 또는 부동산투자	10억원 이상의 건	유동성위험
자산운용 기준에 대한 예외 승인의 건		시장위험
기존 수신 취급상품의 운용금리 변경 (신상품 제외)		시장위험
신규 상품의 취급	신규시장진입, 신상품도입 및 통상적 거래형태가 아닌 상품	신용위험
유가증권 매입	2억원 이상의 건(종목 당) 단, 초단기 금융상품(MMF,MMT,RP등) 및 국공채, 정부 투자기관 발행채권은 제외	시장위험
손실한도 초과 시 반대매매 유보의 건	주식, 채권	시장위험
여유자금 운용시 운용주체별 운용한도		시장위험
기타 위험관리와 관련이 있는 사항		

별표4)

유동성위기 비상계획

1. 목적

조달 유동성위험(Funding Liquidity Risk)과 시장 유동성위험(Market Liquidity Risk)으로 인한 당행 존립 및 경영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상적인 저축은행영업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다.

2. 유동성위기 관리

가. 조기경보지표 선정

(1) 본 조기경보지표는 유동성위기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인식지표이다.

(2) 위험관리팀장은 유동성위험의 악화 추세를 식별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지표를 설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조기경보지표는 저축은행 고유위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화별 지표, 시장전반위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장지표로 구분한다.

가) 통화별지표(저축은행고유 위기관리)

구분	관리목적	세부지표	기준 ^{주4)}
규제 비율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 제시하는 유동성관리지표	유동성비율	100%↓
조달 안정성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조달구조가 안정적인지 점검	수정예대율 ^{주1)}	150%↑
조달 편중도	조달이 편중되는 상황을 사전 관리	소매예금 ^{주2)} 조달비율	80%↓
조달 비용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위기 상황을 사전에 인지	원화 신규 COFIX ^{주3)}	1개월:50bp ↑ 3개월:100bp ↑
만기 다변화	자산/부채의 만기가 월별 연도별로 집중되는 현상을 관리	유동성갭비율 (3, 6, 12개월이내)	-20%↓

주1) 수정예대율 = (대출금 + 대여금) / (예수금 + 차입금)

주2) 소매예금은 개인고객이 가입한 예금임
주3) 신규 COFIX은 9개 주요은행들의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 평균한 금리지수
주4) ↑:기준대비 상승시, ↓:기준대비 하락시 조기경보지표가 기준을 초과/미달한 것으로 인식

나) 시장지표(시장전반 위기관리)

구분	관리목적	세부지표	기 준
시장 금리	시장금리 급격한 변동시 조달 및 운용 정책을 점검	국고채 수익률 (3년)	1개월:100bp ↑ 3개월:200bp ↑
환율	통화별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통화의 변동성	KRW/USD	1개월 :100원 ↑
주가 지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종합주가지수 (KOSPI)	1개월 : -300p ↓

나. 위기단계별 인식기준

유동성 위기는 위기정도에 따라 요관찰, 요주의, 준위기, 위기의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에 대한 정의 및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기상황 정의 및 인식기준>

위기단계	정의	인식기준
요관찰 단계	유동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단계	1개이상의 지표 기준초과와 심사리스크팀장이 판단
요주의 단계	유동성악화가 시작되는 단계	2개이상의 지표 기준초과와 심사리스크팀장이 판단
준위기 단계	예금인출상태가 본격화되고 시중 자금조달이 어려운 단계	1개이상의 통화별지표를 포함한 3개이상 지표 기준초과 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
위기 단계	위기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예금지급 불가능한 단계	2개이상의 통화별지표를 포함한 4개이상 지표 기준초과 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

다. 위기단계별 대응방안

(1) 위기단계 결정

가) 요관찰 및 요주의단계는 조기경보지표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험관리팀장이 결정하고 동 내용을 위험관리협의회에 보고한다.

나) 준위기, 위기단계는 위험관리팀장이 조기경보지표 점검 등 전반적인 유동성현황 분석결과를 검토한 후, 영업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심사팀장과 협의하여 위험관리협의회장에게 협의회 소집을 건의하여 동 협의회에서 결정되며, 이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위험관리팀장은 필요시 위험관리협의회에 위기상황을 보고한다.

(2) 단계별 대응방안

가) 요관찰 및 요주의 단계

본부부서는 부서별 대응방안을 이행하고 이행경과를 위험관리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부서	대응방안
경영기획팀	- 유가증권 만기도래분 회수 및 신규운용 제한적 취급 - 보유유가증권의 매도계획 수립 - 대외기관(모행, 중앙회 등) 유동성 확보 공조 체제 유지
영업기획팀	- 수신금리 조정을 통한 조달규모 확대 - 예수금 변동상황 파악 - 장기성 예수금 조달 및 여신운용의 단기화
심사팀	- 만기도래 대출금 등 모니터링 - 여신변동상황 및 주요여신고객 모니터링
준법지원팀	- 영업점 비상행동계획 지도 - 주요고객 관리방안 수립 및 대고객 서비스 강화

나) 준위기단계(저축은행고유위기 또는 상호결합위기)

본부부서는 부서별 대응방안을 이행하고 이행경과를 위험관리협의회에 보고한다.

부서	대응방안
경영기획팀	- 중앙회에 지준 및 중앙회예치금 담보 차입 - 유가증권, 기타예치금의 단계별 매각 및 신규운용 전면 중단 *매각순위: 기타예치금/유동성채권→매도가능채권→주식 - 장기성 예수금 조달
영업기획팀	- 여신의 만기회수 및 신규취급 일시중단 등 제한적 취급
심사팀	- 여신심사 강화 - 여신회수관련 업무지원
준법지원팀	- 시장루머 확산방지 언론 적극 홍보 - 대고객 홍보자료 배부
검사팀	- 사고정보제보 즉시 사고 현장 투입

다) 위기단계(저축은행고유위기 또는 상호결합위기)

본부부서는 부서별 대응방안을 이행하고 이행경과를 위험관리협의 회 에 보고한다.

부서	대응방안
경영기획팀	- 모행, 중앙회 등 긴급 유동성 자금지원요청 - 유가증권 자금화
영업기획팀	- 여신회수 및 신규취급, 연장 중단
심사팀	- 여신심사 강화 - 여신회수관련 업무지원
준법지원팀	- 유관기관 연계 및 모행 공동 홍보
검사팀	- 사고예방 강화 - 사고정보제보 즉시 사고 현장 투입

라. 위기단계 해제

- (1) 위험관리팀장은 위기사항 관리경과를 검토한 후 위기단계해제 가능여 부를 위험관리협의회에 보고한다.
- (2) 위험관리협의회 위원장은 위험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3. 보고

위험관리팀장은 조기경보지표를 매월 점검하여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현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별첨 1) 조기경보지표 산식

○ 통화별 지표

구분		세부비율	산출식
원화	규제 비율	유동성비율	$\frac{3\text{개월 유동성자산}}{3\text{개월 유동성부채}}$
	조달 안정성	수정 예대율	$\frac{\text{원화대출금}+\text{원화대여금}}{\text{예수금}+\text{원화차입금}+\text{창구중금채}}$
	조달 편중도	소매조달비율	$\frac{\text{예수금(개인,개인사업자)}}{\text{총예수금}}$
	조달 비용	신규 COFIX	거치식 수신 신규금리 (중금채, 정기예금,CD 등)
	만기 다변화	유동성갭 비율	$\frac{\text{기간별(유동성자산-부채)}}{\text{총자산}}$

○ 시장지표 및 시나리오지표

구분		세부비율
시장 지표	시장금리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
	주가지수	KOSPI
	환율	KRW/USD